

CFP 교재 수정 사항

보험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8	계산		[첨부] 참조	계산수정
237	하6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삭제	문구삭제
316	상13		[첨부] 참조	해설수정

[첨부] 28페이지 박스. 계산수정

현재 보유자본에서 창출 가능한 소득($100,000 \times 5\%$)/(1.05) 4,762

여타 보유자산으로부터 투자소득($15,000/1.05$) 14,286

부족소득 30,952

부족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본($30,952/5\%$) + 30,952 649,992

자본보유법으로 산출한 사망보험 필요보장액은 약 650,000천 원이다.

[첨부] 316페이지 상13. 해설수정

- 2단계: 확정보험금 결정한다.
 - A 사 B 사 모두 2016 년 1 월 1 일 이후 가입한 4 세대 실손보험이고 계산방식이 동일하므로, 보험금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인 150 만원으로 확정된다.
- 3 단계: 각 보험사의 약 별보상책임액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다.
 - A 사: 150 만원 $\times$ {5 천만원/(5 천만원+3 천만원)}= 937,500 원
 - B 사: 150 만원 $\times$ {3 천만원/(5 천만원+3 천만원)} = 562,500 원

은퇴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78	하7	- 국민연금급여액 500,000원(A급여액 270,000원)인 경우 → (A급여액 적용산식) {(334,810원	- 국민연금급여액 520,000원(A급여액 270,000원)인 경우 → (A급여액 적용산식) {(334,810원	계산수정

		$- 2/3 \times 270,000 \text{원} \} + 167,400 \text{원} = 322,210 \text{원}$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 837,020월 $- 500,000 \text{원} = 337,020 \text{원}$ ☞ 각 산식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인 337,020원 으로 산정	$- 2/3 \times 270,000 \text{원} \} + 167,400 \text{원} = 322,210 \text{원}$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 837,020월 $- 520,000 \text{원} = 317,020 \text{원}$ ☞ 각 산식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인 322,210원 으로 산정	
81	박스		[첨부] 참조	문구수정
82	상6	한편, 임의가입 후 3개월 이상	한편, 임의가입 후 6개월 이상	기간수정
82	상13	한편, 3개월 이상 계속	한편, 6개월 이상 계속	기간수정
86	하4	자녀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양자,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포함)를 말하고, 부모는 60세(출생연도별 지급연령 상향조정)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이다.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녀(양자,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포함) 를 말하고, 부모는 60세(출생연도별 지급연령 상향조정)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이다.	문구수정
95	박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문구수정
109	하2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해외송금 중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해외에서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자	문구수정
177	상9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간수정
197	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금액수정

206	하2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일시납은 100%) 까지이며 1회 추가납입한도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총납입한도를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일시납은 100%) 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1 회 추가납입한도는	문구수정
269	표	3/4분기 포트폴리오 -1.6(-6.3)	3/4분기 포트폴리오 -1.6(-6.6)	오타수정

[첨부] 81페이지 박스. 문구수정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한 가입대상 제외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세금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98	상2	제7장 은퇴소득과 세금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 5 장 금융자산 세금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문구수정

사례집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94	문3	3. 근로자인 홍동기(40세, 연봉 6,000만 원)씨는	3. 근로자인 홍동기(40세, 총급여액 6,000만 원)씨는	용어수정
94	하4	- 은퇴저축펀드의 은퇴기간 중 분할금은 매년 초에 수령하며, 전액 연	- 은퇴저축(투자) 상품의 은퇴기간 중 분할금은 매년 초에 수령하며,	문구수정 문구삽입

		금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전액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95	문3	④ 가정조건에 따라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7,489 천 원이 많다.	④ 가정조건에 따라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6,790 천 원이 많다.	답지수정
96	해설	④ 60세 시점에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7,489 천 원이 많음 $= 244,835.22(\text{투자안B}) - 207,346.33(\text{투자안A}) = 37,488.89$ •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금액: 244,835 천 원 $\rightarrow 18,881.68[\text{CF0}], 18,407.08[\text{CF1}], 17,843.19[\text{CF2}]; 8, 18,050.89[\text{CF3}]; 10, 18,258.58[\text{CF4}]; 5, 6[i], \text{NPV} = 244,835.22$	④ 60세 시점에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6,790 천 원이 많음 $= 244,135.96(\text{투자안B}) - 207,346.33(\text{투자안A}) = 36,789.63$ •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금액: 244,136 천 원 $\rightarrow 18,714.39[\text{CF0}], 17,843.19[\text{CF1}]; 9, 18,050.89[\text{CF2}]; 10, 18,258.58[\text{CF3}]; 5, 6[i], \text{NPV} = 244,135.96$	해설수정
96	표	60세 (1년차) 18,881.68 - 18,881.68	60세 (1년차) 18,881.68 167.29 주) 18,714.39	표수정
96	표	61세 (2년차) 18,881.68 474.60 주) 18,407.08	삭제	열삭제
96	표	62~69세 (3 ~10년차)	62~69세 (2 ~10년차)	년차수정
96	표	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18,881.68 - (29,134.19 - 18,881.68)\} \times 5.5\%$	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18,881.68 - (792 \times 20)\} \times 5.5\%$	주석수정
96	하3	• 투자안(B): 6. 68 % $\rightarrow 244,835.22[\text{FV}], 500[\text{PMT}], 240[\text{n}], i = 0.5406$ $\rightarrow 100[\text{PV}], 12[\text{n}], 0.5406[i], \text{FV} = 106.68$	• 투자안(B): 6. 66 % $\rightarrow 244,135.96[\text{FV}], 500[\text{PMT}], 240[\text{n}], i = 0.5386$ $\rightarrow 100[\text{PV}], 12[\text{n}], 0.5386[i], \text{FV} = 106.66$	해설수정
106	문11	11. 이민석(40세) 씨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60 세까지 25년간	11. 이민석(40세) 씨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65 세까지 25년간	나이수정
108	문12	60 세 시점 자산균별 투자비중	65 세 시점 자산균별 투자비중	나이수정

125	상4	가. 기타소득금액 = 5,000천 원 × (1 - 40%) = 3,000천 원	가. 기타소득금액 = 5,000 천 원 × (1-60%) = 2,000 천 원	계산수정
125	하14	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3,000천 원) × 20%(원천징수세율) = 600천 원	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2,000 천 원) × 20%(원천징수세율) = 400 천 원	계산수정
125	하4	•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52,000천 원) + 기타소득금액(3,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240천 원 •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금액 (52,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00천 원(기 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6,390천 원	•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52,000천 원) + 기타소득금액(2,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090천 원 •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금액 (52,000 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 천 원)] × 15% - 1,260 천 원 + 400 천 원(기 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6,190 천 원	계산수정
285	표	일반관리비(월) 6,000	일반관리비(월) 8,000	금액수정
450	하3	최대 44%(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된다.	최대 45.9%(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된다.	%수정